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5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17. 4. 21. (금) 10:00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 속 애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7년 4월 11일

○ 회부일자 : 2017년 4월 14일

3.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원 사업과 역기능 예방 조치
를 명확히 함으로써,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
기능 예방조례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관련 조문을 개정 함(안 제1조~제2조)
- 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확대 및 체계화 함(안 제5조)
-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품 구매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 함
(안 제6조)

-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관리, 사이버유해사이트 차단 규정을 명료화 함(안 제10조~제11조)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 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기숙사 등의 학생용 컴퓨터와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과 역기능 예방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역기능 예방 제품 구매절차와 방법을 강화하였으며, 정보화 역기능 예방 업무 담당 전문인력 배치 문제 등을 개선·보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과 역기능 예방 관리의 내실화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제2조에 본 조례 개정에서 강조한 핵심사항인 ‘정보화 역기능’과 ‘기술적 안전조치’의 개념 정의를 추가한 것은 본 조례 개정의 목적과 주요사항에 대한 의미전달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되며,
- 제5조에 매년 수립·시행해야하는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정책수립과 세부 사업 추진을 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시행해 나갈 수 있게 할 것으로 판단됨.

- 제6조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제품 구매 시 그 규격과 구매계획을 사전에 공지하고,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기술평가에 객관적인 산출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과 구매 제품의 기능에 대한 규격을 매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한 것은 제품 구매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보화 역기능 예방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 제13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무 담당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배치하고 해당업무를 단일 부서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정보화 업무의 실질적 내실화와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됨.